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. 11. 19 선고 2023가단44169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C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조민,선동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중

변 론 종 결 2024. 9. 24.

판 결 선 고 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72,403,768원의 한도 내에서 184,197,051원 및 그 중 173,001,771원에 대하여 2023. 10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2. 9. 8. 소외 주식회사 E(이하 ‘소외 회사’라고 한다)와 포르쉐자동차 파나메라4E를 리스이용금액 합계 209,641,350원, 리스기간 60개월, 연체이자율 연 19.9%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,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72,403,768원을 한도로 소외 회사의 위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소외 회사는 리스료 납부의무를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23. 10. 13.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원금 173,001,771원, 이자 5,046,954원, 연체료 6,148,326원, 합계 184,197,051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인 272,403,768원의 한도 내에서 리스료 등 184,197,051원 및 그 중 원금 173,001,771원에 대하여 최종 계산일 다음 날인 2023. 10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9.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상 대표인 F의 요청으로 몇몇 서류에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체결된 2022. 9. 8.자 리스계약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.

나.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이는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최현정